

선	기관국장
람	

제1749호 2023. 5. 4.(목)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1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_____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19호 인천광역시서구기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 — 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2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 1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2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_____ 2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22호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 _____ 2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23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 _____ 2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24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3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25호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_____ 3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26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_____ 3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27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_____ 4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28호 인천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_____ 4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29호 인천광역시 서구 스톡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_____ 4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30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5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31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32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6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3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	7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34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9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35호	인천광역시 서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9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36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37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101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1054호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107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1055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108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1056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125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1057호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39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1058호	인천광역시서구건축사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지급규칙 폐지규칙	141

제1749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기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3년 5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019호

인천광역시서구기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기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고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캐릭터, 구기, 문장, 휘장, 구민의 노래, 나무, 동물, 꽃, 새, 사업 브랜드를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별표 1

2. 캐릭터: 별표 2

3. 구기: 별표 3

4. 문장: 별표 3

5. 휘장: 별표 3

6. 구민의 노래: 별표 4

7. 나무: 은행나무

8. 동물: 사슴

9. 꽃: 국화

10. 새: 까치

11. 사업 브랜드: 구의 주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로고 또는 캐릭터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이용 여건에 맞는 응용형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구기) ① 구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구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하여야 하며, 또한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한다.

③ 구기의 제작, 게양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제5조(문장) ① 문장은 철인으로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을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허가증 및 면허증
3.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시설 또는 물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

제6조(회장)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구의 명예를 국내외에 떨친 사람
2. 구 출신으로서 학술, 예술, 체육 등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어 타의 모범이 된 사람
3.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4. 구 출신 해외동포로서 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구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회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장 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동일인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회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구기·문장·회장·구민의 노래·나무·동물·꽃·새: 총무과
2. 심벌마크, 캐릭터: 홍보정책담당관
3. 사업 브랜드: 각 사업 담당 부서

③ 구청장은 상징물을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 등에 부착하여 공급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경우에는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변경 등) 구청장이 구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사용) ①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 제2호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구 심벌마크 및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상징물의 도안을 영리나 그 밖의 사적(私的)인 목적으로 홍보·사용할 수 없으며, 상품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공모전) ① 구청장은 구의 상징물 가치를 높이고 창의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상징물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을 심사하여 우수 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작품을 출품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 상패 또는 상장 등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승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구청장이 사용물 사용(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징물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10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구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관련 단체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심벌마크(제3조제1호 관련)



1. 심벌마크

- 1) 서구의 상징물인 까치와 인천의 어질 仁을 모티브로 어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뜻함
- 2) 서곶과 검단 두 고을의 주민이 하나로 어우러져 화합함으로써 선진 서구 건설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기상 표현
- 3)  는 서구 주민의 화합과 푸르른 자연환경, 깨끗한 주거환경을 의미
- 4)  는 위와 같은 바탕 위에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서구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며 비상하는 모습으로서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서구의 힘찬 기상 표현

2. 로고타입

- 1) 국문형

인천광역시 서구

- 2) 영문형

Seogu Incheon Metropolitan City

- 3) 국영문혼용형

인천광역시 서구

Seogu Incheon Metropolitan City

3. 브랜드 시그니처

- 1) 국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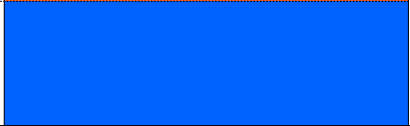
- 2) 영문형



- 3) 국영문혼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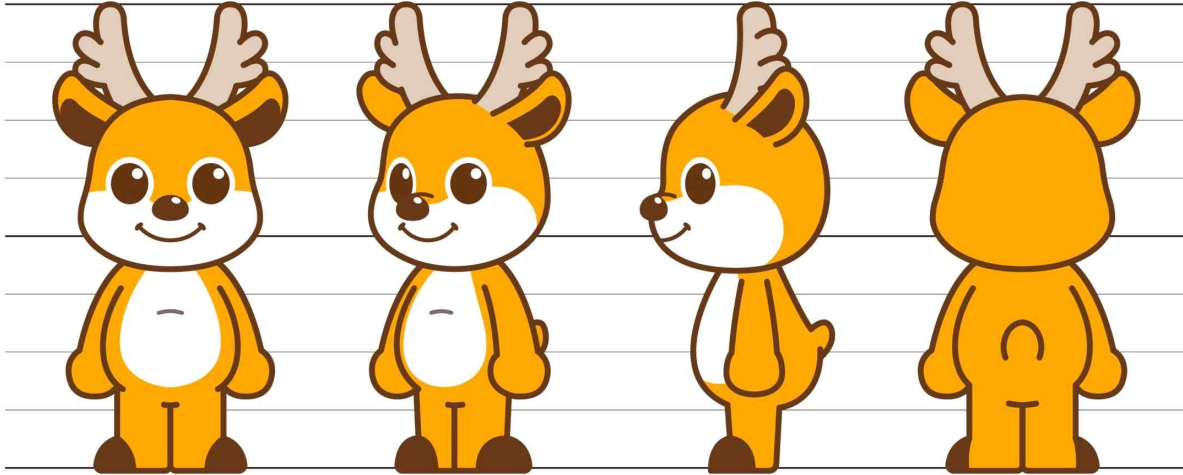


4. 전용색상

<p>서구 그린 (Seogu Green)</p>		<p>R0 G162 B0 C78 M15 Y100 K0</p>
<p>서구 오렌지 (Seogu Orange)</p>		<p>R255 G96 B31 C0 M76 Y85 K0</p>
<p>서구 블루 (Seogu Blue)</p>		<p>R0 G98 B255 C84 M61 Y0 K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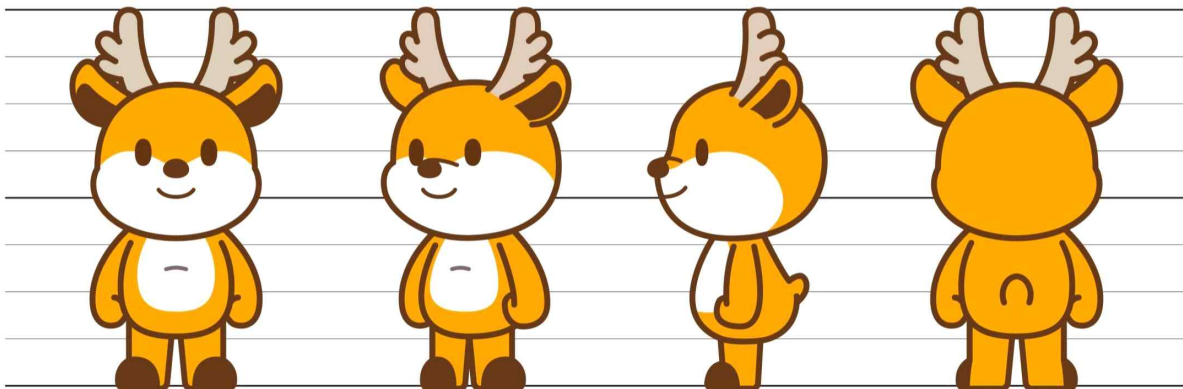
캐릭터(제3조제2호 관련)

1. 서동이



PANTONE 482 C	PANTONE 137 C	PANTONE 1545 C
HTML #DBC8B6	HTML #FFA400	HTML #653818
RGB 219 200 182	RGB 255 164 0	RGB 101 56 24
CMYK 8 17 20 0	CMYK 0 36 100 0	CMYK 0 68 100 67

2. 동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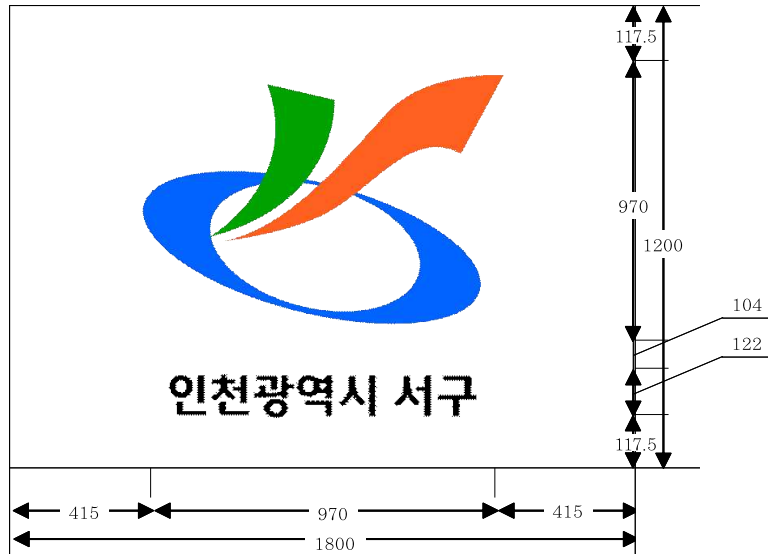


PANTONE 482 C	PANTONE 137 C	PANTONE 1545 C
HTML #DBC8B6	HTML #FFA400	HTML #653818
RGB 219 200 182	RGB 255 164 0	RGB 101 56 24
CMYK 8 17 20 0	CMYK 0 36 100 0	CMYK 0 68 100 67

- 평화와 인내, 사랑을 상징하는 사슴을 형상화한 캐릭터인 서동이는 서구 곳곳에서 서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답하고, 말해주는 대변인의 역할을 한다.
- 2021년 기존 서동이 디자인을 리뉴얼하며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캐릭터에 관심이 많은 20~30대를 겨냥하여 동생 '동동이'를 추가했다.

구기, 문장(철인), 휘장(제3조제3호~제5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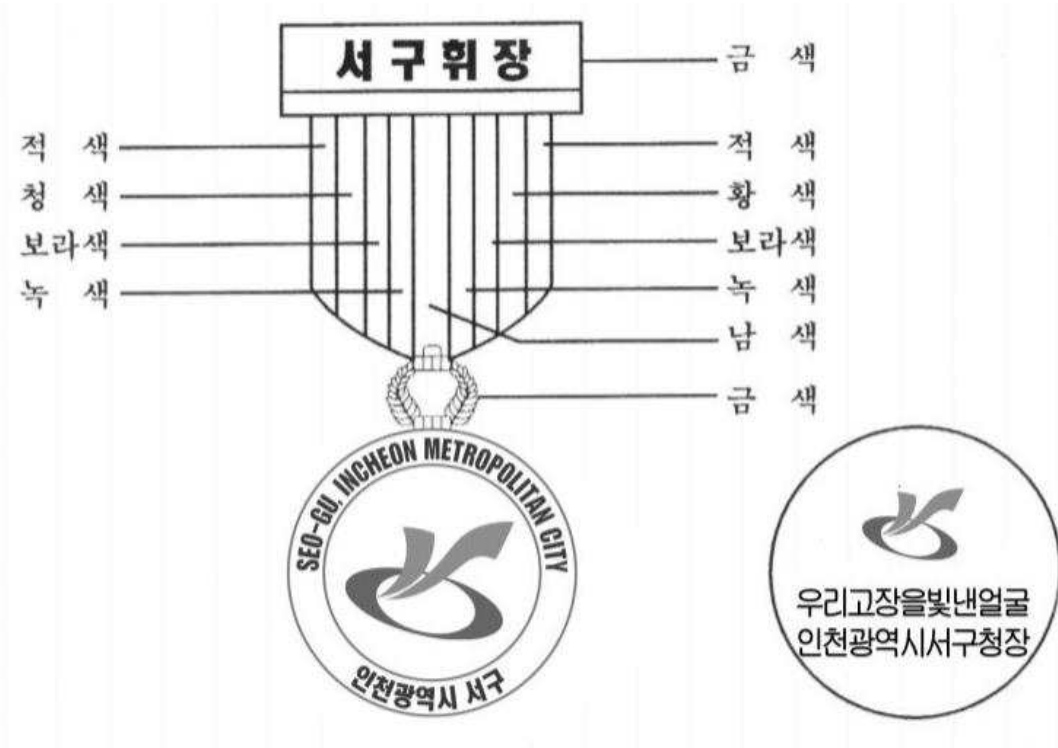
1. 구기



2. 문장(철인)



3. 휘장



구민의 노래(제3조제6호 관련)

구민의 노래

Moderato(경쾌하게)

조선희 작사
윤영진 작곡



1. 원 - 적 산 구 비마 다 치 솟 는 정 기
 2. 새 - 립 계 설 계하 는 내 일 이 있 어
 3. 조 - 상 의 얼 이있 어 전 붕 을 이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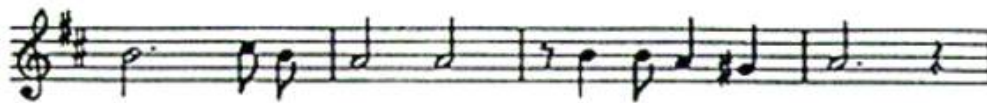
높 - 다 란 하 늘 위 에 풍 요 를 열 고
 누 - 리 엔 동 이트 는 아 침 을 열 고
 어 - 른 의 맥 을 따 라 가 혼 을 심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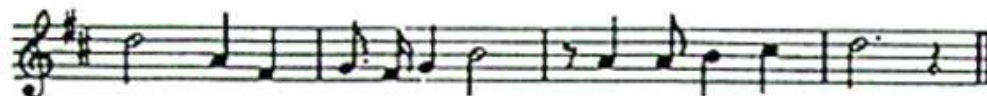
서 - 해 의 힘 찬슬 기 야 망 을 - 퍼 는
 이 - 마을 저 사람 이 한 데 어 - 울 려
 태 - 양 이 타 오 르 는 후 손 만 - 대 에



축 복 이 뿌 리 내 린 눈 부 신 터 전 아-
 즐 거 이 도 와 가 며 한 마 음 되 네 아-
 알 뜰 한 손 길 타 고 행 복 이 오 네 아-



아 우리 서 구 회 망 의 낙 원
 아 우리 서 구 사 랑 의 가 족
 아 우리 서 구 약 진 의 고 장



가 꾸 이 빛 내 가 며 다 저 나 가 세
 손 잡 아 이 깨 질 며 퍼 저 나 가 세
 대 망 의 불 밝 혀 서 키 워 나 가 세

회장 수여대장(제6조제2항 관련)

번호	수여일자	수 여 자 인 적 사 항		수 여 사 유	비고
		주 소	성명(단체명)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 (제12조제1항 관련)	
신 청 인	기관단체·회사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FAX)
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	
사용(변경)목적	
사용(변경) 내용 (구체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첨부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사용계획서.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서(제12조제2항 관련)

신 청 인	기관단체·회사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FAX)	
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		
사 용 료		

「인천광역시 서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제1749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2023.05.04.(목)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3년 5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02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정보화를”을 “지능정보화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정보통신서비스”를 “지능정보서비스”로, “노령자”를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
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 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
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
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6.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을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정보화 역기능”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국가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계획”을 “실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지역정보화”를 각각 “지능정보화”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정보화사업”을 “지능정보화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실행계획 추진실적”으로, “시행계획”을 “실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행계획”을 “실행계획”으로 한다.

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제5조의 제목“(정보화책임관)”을“(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정보화 시책”을 “지능정보화 시책”으로, “지역정보화 사업”을 “지능정보화 사업”으로,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담당업무”를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담당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 중 “정보화”를 각각 “지능정보화”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지역정보화의 추진”을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분야별 정보화의 추진)”을“(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화”를 각각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민간기관·단체”를 “민간사업자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지능정보통합센터”로 한다.

제11조의 제목“(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를“(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화사업의”를 “지능정보화사업의”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를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절차”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정보화 교육)”을“(지능정보화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화 교육”을 “지능정보화 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749호 인천광역시서구구보 2023.05.04.(목)
“정보화”를 각각 “지능정보화”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의 제목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정보화 역기능”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터넷 중독”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을 할 수 있다.

제1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6항 중 “정보화책임관”을 각각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의2(마을지원활동가 운영)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을지원활동가를 둘 수 있다.

② 마을지원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한 지원
2.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
3. 신규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마을 자원 발굴 및 관리 지원
4.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마을지원활동가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마을지원활동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마을지원활동가의 선발, 활동비 지급기준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문화국장,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연도도”를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부표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제5조 관련)

○ 신청단체:

○ 신청분기:

(단위 : 원)

징수 월일	징수자		체납자			징수내역				징수 확인	특별 징수 공적 (사유)	포상금 청구 지급액	지급일	본세	가산금	구분	
	직급	성명	주소	성명	주민 번호	년도 기분	과세 번호	세목	징수액								

※ “구분”란에는 과년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제5조 관련)

○신청단체:

○신청분기:

(단위 : 원)

징수 월일	징수자		납세의무자			징수내역				징수 확인	구분	포상금 청구 지급액	지급일	본세	가산금	비고	
	직급	성명	주소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년도 기분	과세 번호	발굴 세원	징수액								

※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은닉세원, 무단점용, 세정발전, 세입증대 등을 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제6조제3항 관련)

○신청단체:

○신청분기:

○신청자: (인)

(단위: 건, 원)

구 분	징수기간	건수	금 액			포상금 계산액	포상금 신청액	비고
			합계	본세	가산금			
합 계								
과년도 체납액 징 수	소 계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숨은 세원 발굴	소 계							
	미등기							
	탈루은닉세원							
	무단점용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세정발전							
	세입증대							

- ※ 첨부: 1. 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사 의결서 사본 1부.
 2. 포상금지급신청서, 숨은세월발굴내역(별지 3호서식 부표1, 부표2)
 3.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사본 1부.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청단체:

○신청분기:

(단위: 건, 원)

신청자			정수(세월말균)액				포상금 계산액	포상금 신청액	거래 은행	계좌 번호	비고
소속 (주소)	성명	주민 등록 번호	건수	합계	본세	가산금					

위와 같이 확인하며 계좌입금 의뢰함

(인)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사항)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폭언, 폭행 등 피해 발생 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인 선임
5.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치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폭언, 폭행 등 피해 발생 시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같은 사유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다.

제8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내에 해당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 기준(제5조제2항 관련)

지 원 구 분	근 거	지 원 한 도	세 부 기 준
심리상담	제5조제1항제1호	상담 연계	
의료비	제5조제1항제2호	예산의 범위 내	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폭언, 폭행 등 피해 발생 시 휴식시간	제5조제1항제3호	2시간 범위 내	
법률상담	제5조제1항제4호	상담 연계	
소송대리인 선임	제5조제1항제4호	예산의 범위 내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3장 적용
교육 및 연수	제5조제1항제5호	예산의 범위 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5조제1항제6호	예산의 범위 내	

[별지 서식]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신청자	소 속		직 급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성 명		연락처			
민원의 내용	건 명					
	민원요지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	피해사실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입증자료	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용	신청내용					
	증빙자료	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	직 위					
	성 명	(서명, 날인)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3.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5.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훈련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의 제목“(위원회의 설치)”를“(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를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로,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9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1항”으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위원회의 위원의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의3(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2.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간의 연계체계를 마련,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등 국가 및 서구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추진하는 시행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과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법인 및 관련 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여성고용업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사업
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위한 위탁운영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서구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

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및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 피해자 등 심리상담 지원사업
4. 스토킹 피해자 등 법률상담 지원사업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방지와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토킹 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방지와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 예방위원회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 각각 1명 이상 포함한다. 다만, 제7호는 제9조에 따라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 수행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또는 인천서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속 공무원으

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람
8.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사례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6조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례결정위원회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 2.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 통합·운영)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아동빈곤예방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3장 아동위원

제11조(아동위원의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아동위원의 수는 각 행정복지센터별 1명 이상으로 한다.

③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2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아동위원의 역할) 아동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 공무원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14조(아동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였을 때
2.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였을 때

제4장 보칙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 업무 담당이 된다.

제1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거나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민간위탁”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서구민은 타지역 주민보다 사용에 있어 우선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를 “사람이 체육시설 사용자 및 관리에 피해를 주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하는 자”를 “하는 사람”으로 “전염병 질병”을 “감염병”으로 “확인된 자”를 “확인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만취된 자”를 “만취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휴대한 자”를 “휴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사유가 있는 자”를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한 후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

5. 영리를 목적으로 상거래 행위를 한 사람

제10조의 제목 “(사용 시간)”을 “(사용 시간 및 휴관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체육시설의 사용 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1. 체육시설의 이용 및 대관 : 06:00 ~ 22:00

2. 강습 프로그램 : 06:00 ~ 22:00

제12조제1항 중 “주관하는”을 “주관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헬스장”을 “헬스장, 체육관”으로, “한부모가족”을 “한부모가족”으로,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를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용자에 한하여”를 “이용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 ⑦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그 증빙서류를 지참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⑧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전년도 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와 체육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반환
2. 수영장·헬스장 입장료는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총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3. 수영장·헬스장 입장료는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4. 납부된 수강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분쟁품목별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반환
5. 시설 등의 사용료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날이 사용예정일 7일 이전이면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7일 미만이면 위약금 5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6. 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2 반환 기준을 준용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으로,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할”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도

록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손해배상 및 사용자의 책임)

- ① 사용자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공동책임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수탁자 선정기준)”을 “(민간위탁수탁자 선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탁자”를 “민간위탁수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탁대상자”를 “민간위탁수탁자”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수탁자의 의무)”를 “(수탁자에 대한 권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수탁자는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및 별표 중 “공연장”에 관한 규정은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조례」 개정 이후 폐지한다.

제4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 위탁을 받은 운영자는 종전 조례에 따라 위탁을 받은 운영자로 본다.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과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⑦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그 증빙서류

를 지참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⑧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전년도 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6항과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그 증빙서류를 지참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⑦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전년도 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별표 1]

인천광역시 서구 구립 체육시설(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기 능
북청라대교 교량하부체육시설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7-17	- 풋살장, 농구장, 족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다목적운동장, 주민운동 시설, RC경기장
가좌배수지 배드민턴장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11	- 배드민턴장
마전게이트볼장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05-6,7	- 게이트볼장, 다목적체육관
서구국민체육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525	- 휘트니스실, 문화교실,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청라복합문화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대로 26	- 수영장, 휘트니스룸
원당문화체육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25-1	-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수영장
블로문화체육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블로동 789	-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작은도서관, 문화센터
서구살내게이트볼장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 124 (신현동 184-4, 원신근린공원내)	- 게이트볼, 배드민턴장
검암국궁장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468-19	- 국궁장

[별표 3]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사용료(제11조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구 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비 고	
- 서구국민 체육센터	수영장 사용료	1일 사용	2,000	3,000	5,000	○ 단체라 함은 동일 목적으로 20인 이상이고, 인솔자에 의해 인솔되며 동시에 사용하는 자를 말함. ○ 월회원이란 함은 1개월 단위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청라복합 문화센터		단체	1,500	2,500	4,000		
- 원당·불로 문화체육센터		월회원	28,000	33,000	42,000		
		강습회원	38,000	44,000	52,000		
- 서구국민 체육센터	체 력 단련실	1일 사용	-	2,000	3,000	○ 강습회원이라 함은 입학하여 주3회 이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를 말함. ○ 샤워장 사용료 포함	
- 원당문화 체육센터		월회원		25,000	35,000		
- 서구국민 체육센터	체육관 사용료		700	1,200	1,500	○ 1시간 기준	
- 원당·불로 문화체육센터							
- 서구국민 체육센터	수강료	체육프로그래	탁구등	30,000	35,000	40,000	○ 주5회(월~금) 운영의 1개월 강습 (1일 1회 1시간, 배드민턴은 1일 1회 2시간 기준) ○ 샤워장 사용료 포함
- 청라복합 문화센터			배드민턴	33,000			
- 원당·불로 문화체육센터			에어로빅	33,000			
- 원당·불로 문화체육센터		문화프로그램	4,000 범위 내			○ 1시간 기준 4,000원 범위 내 ○ 재료비는 별도 본인부담 ○ 4주를 1개월로 봄	
- 서구국민 체육센터	대관료	체육관	80,000			○ 1회대관은 시행규칙 별표의 조기,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하며,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1회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 원당·불로 문화체육센터							
- 마전게이트 불량		다목적체육관	5,000			○ 1일 2시간 기준	
비 고	<p>○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물함사용료 월 5,000원 범위내, 열쇠분실 교체료 7,000원, 회원카드재발급수수료 1,000원의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p> <p>○ 사용료의 할증 및 할인</p> <p>1) 토·일·공휴일은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증할 수 있다.</p> <p>2) 문화 및 체육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특성상 수강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조정가능</p> <p>3) 2종목 이상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p> <p>4) 3개월이상 장기 이용자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p> <p>5)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 한다.</p>						

다)”을 “문화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소공연장”을 “공연장”으로 한다.

제4조 중 “회관”을 “문화시설”로 한다.

제4조의2 중 “회관”을 “문화시설”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관”을 “문화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회관 내 질서”를 “문화시설 내 공공질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종교”를 “종교단체나 정치적 목적”으로, 같은 조 제6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호(종전의 제6호) 중 “부적당하다고”를 “부적당하다고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로 한다.

4. 연 2회 이상 사용료 및 사용 변경에 따른 추가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문화시설 사용의 취하 또는 작품 변경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체 또는 사설 단체에서 진행하는 기념식, 시상식 등 공공성이 배제된 공연 또는 행사
 7. 대관 승인 후 기일 내 계약 미체결 또는 사용료 미납(체납) 시
 8.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9. 대관 허가 승인 없이 문화시설을 사용한 경우
 10. 문화시설의 승인 없이 과도한 입장권 또는 교환권 발행으로 지정 좌석을 초과한 경우
 11. 사용자의 안전 보장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여 운영 또는 진행을 할 경우
 1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제6조제1항제2호 중 “회관”을 “문화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체납하였”을 “체납 또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로 하

며, 같은 항 제4호 중 “회관”을 “문화시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회관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를 “문화시설에 입장하는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운영한다”를 “운영하며, 이때 발생하는 판매 수수료는 지정예매처 요율에 따른다”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사용은 중복 되어서는 안된다”를 “사항은 중복하여 감면하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업체 등”을 “기업체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회관”을 “문화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아목 중 “포로가족”을 “포로 가족”으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구성원

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관”을 “문화시설”로,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별표”를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회관”을 “문화시설”로 한다.

4. 심야: 22:00 ~ 24:00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 및 제22조에 따른 위탁운영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공연·행사 및 전시

제12조제2항제2호 중 “회관이”를 “구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회관

이”를 “구가”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투자비율”을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시·구에서 후원하는 무료공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무료공연·전시”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문화예술 공연·전시

5. 구청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단체가 주관하는 공연·전시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회관”을 “문화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회관”을 “문화시설”로, “경우”를 “경우: 전부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부 반환

나.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잔여일 만큼 일할 계산한 사용료 반환

3.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가. 허가사용일 30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부 반환

나. 허가사용일 15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50퍼센트 반환

다. 허가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20퍼센트 반환

라. 허가사용일 이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총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잔여일 만큼 일할 계산한 사용료 반환

② 사용일자의 변경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한 번만 가능하다. 다만, 납부

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제1항 중 “회관”을 “문화시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회관”을 “문화시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양도 및 재대여 금지)”를“(양도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회관”을 “문화시설”로, “양도하거나 재대여(再貸與)하지 못한다”를 “양도할 수 없다”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입장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중 “회관”을 “문화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에”로, “협의”를 “협의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회관”을 “문화시설”로 한다.

제18조제5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5호) 중 “회관”을 “문화시설”로 한다.

5. 문화시설 내 흡연 또는 음주행위
6. 공연 주체와 사전 협의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7. 공연물 또는 전시품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8. 고성, 소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9조의 제목“(홍보물의 부착)”을“(홍보물의 게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회관 내에 부착코자”를 “문화시설 내에 게시하고자”로, “협의”를 “협의 후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하여야 하고 공연·행사 등 종료 시 지정기한까지 철거”로 한다.

제20조의 제목“(회관의 회원)”을“(문화시설의 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회관”을 각각 “문화시설”로 한다.

제21조의 제목“(회관의 임대)”를“(문화시설의 임대)”로 한다.

제22조 중 “회관”을 “문화시설”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제1호 관련)

명 칭	위 치
서구문화회관	인천 서구 서달로 190
청라블루노마홀	인천 서구 청라대로 20

[별표 2]

서구문화회관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기준	사 용 료		비 고	
		공연(영화)	행 사		
대 공 연 장	오 전	100,000	150,0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 시에는 당해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 공연(행사)준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공연(행사)의 준비·진행·철거를 위하여 12:00~13:00, 17:00~18:00 사용 시에는 다음 회 사용료의 25퍼센트로 하고, 22: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150퍼센트로 함. ○ 1회로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 나를 말함.	
	오 후	130,000	180,000		
	야 간	200,000	280,000		
소 공 연 장	오 전	30,000	45,000		
	오 후	45,000	65,000		
	야 간	70,000	90,000		
회 의 장	1 회	60,000			
전 시 실	1 일	47,500			○ 1일(09:00~22:00) ○ 면적 : 314㎡(≒ 95평)

2.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부속설비						
피아노		1회공연	30,000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피치 변경 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무대시설	오케스트라피트	1회공연	20,000		○ 장치봉은 공연·행사중 (리허설 포함) 작동할 경우 부과함 ○ 덧마루, 댄스플로어의 설치 및 철거는 사용자가 하여야 함 (관련 소모품 지참) ○ 댄스플로어 사용은 무용공연에 한함	
	댄스플로어	1회공연	100,000			
	덧마루	1회	기본 66㎡ 이하	50,000		
			66㎡ 초과 추가 6.6㎡당	10,000		
	음향반사판	1회	50,000			
	이동용합창단석	1일	60,000			
장치봉	1일	20,000				
무대음향	대공연장	1일	100,000		○ 음향시스템 1일 기본 : 음향콘솔, 메인 스피커, 모니터 스피커 2대 ○ 외부 음향시스템 극장 장비 연동시 음향시스템 기본사용료 적용 ○ 이동형 음향장비 : 아날로그 믹서 1대, 파워드 스피커 2대, 마이크 2대, 운영인력 미제공 ○ 건전지 및 소모품 사용자 부담	
	소공연장	1일	50,000			
	이동형 음향장비 (전시설 및 로비 등)		1일	30,000		
	마이크	PIN	1일 1개	30,000		
		W/L	1일 1개	20,000		
		콘덴서	1일 1개	10,000		
		다이내믹	1일 1개	5,000		
	모니터스피커	1일 1대	10,000			
빔프로젝트	1회공연	30,000				
무대조명	대공연장	1시간	50,000		○ 객석 조명만 사용 시 부과하지 않음	
	소공연장	1시간	20,000			
	특수	핀스포트라이트 1회공연 1대	2kw 20,000			
	효과	포그머신(액별도)	1일 1대	20,000		
		드라이아이스(액별도)	1일 1대	10,000		
		무빙라이트	1회 1대	15,000		
냉난방	대공연장	1시간	시설별 시간당 연료(전기포함) 시세에 10퍼센트를 가산한 범위 내		○ 냉방 : 6월~8월 ○ 난방 : 11월~3월 * 기온급변 시 사용자와 협의조정 가능함.	
	소공연장	1시간				
	전시설	1시간				
	회의장	1시간				
의상 및 대소도구		1회	취득가액의 5퍼센트		○ 단위당 취득가액이 100,000원 이상인 것에 한함	

※ 피아노, 무대시설, 무대음향, 무대조명 중 공연(행사)연습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하며, 부속설비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에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

청라블루노바홀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1. 시설사용료

가. 일반기준

- 1) 공연 대관 1일이라 함은 09:00 ~ 22:00 까지를 말한다. 단, 체육시설 및 그 밖의 시설 기본 사용시간은 1회 1시간으로 한다.
- 2) 토·공휴일의 경우 총 시설 사용료에 20퍼센트를 할증 적용한다.
-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 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사용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본 대관료 할인 및 감면 기준은 다음을 따른다.
 - 가) 공연장의 평일 사용에 한해 09:00~12:00 이용시 공간 사용료의 40퍼센트를, 13:00~17:00 이용시 공간 사용료의 30퍼센트를, 09:00~17:00 이용시 공간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한다
 - 나) 장기대관(10일 이상의 대관)의 경우 실 사용료에 한하여 1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 적용할 수 있다(공간 사용료에 한함, 장비 사용료는 제외함).
 - 다) 서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나 서구 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기본 대관료에 20퍼센트를 할인 적용할 수 있다(공간사용료 및 장비 사용료 포함)
 - 라) 3개 항목 이상 할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 4) 개별기준 중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한다.
- 5) 공연 종료 후 공연 대관 시간 내에 철수를 완료할 경우에는 추가 대관료를 받지 아니한다.
- 6) 순수예술은 국악, 풍물, 순수음악, 클래식, 연극, 무용, 재즈, 오페라를 말한다. 다만, 공연의 규모 및 상업적 의도가 명확할 경우에는 뮤지컬 대관료를 적용한다.
- 7) 준비 대관은 무대설치, 연습, 리허설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 8) 시연회 및 공개 리허설은 공연 대관료에 준한다.
- 9) 냉방비, 난방비는 1시간 당 연료비(전기료 포함) 시가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 사용자 의무 가동 시간 : 3시간(예열시간 포함)
 - 냉방 6월 ~ 8월 까지, 난방 11월 ~ 3월 까지 의무신청으로 하되, 기온 급변시 사용자는 관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10)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가 10퍼센트를 부담한다.
- 11) 부대시설 사용료와 개별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개별기준

-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료

(단위 : 원 / 1회)

구분 / 시설명		단위 (부가가치세별도)	순수예술	뮤지컬	대중음악 / 행사	비고
공연장	공연대관	1일	400,000	600,000	800,000	
	연습/준비	오전	80,000	100,000	140,000	
		오후	100,000	120,000	160,000	
		야간	120,000	140,000	180,000	
		철야(3시간)	300,000	320,000	360,000	
전시실		1일 (09:00~22:00)	100,000	- 분할대관 시 대관료의 50퍼센트 적용 - 1일 대관료의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 당 30퍼센트 가산		

※ 순수예술 : 국악, 풍물, 순수음악, 클래식, 연극, 무용, 재즈, 오페라

2. 부속시설 사용료

시설명 / 구분		단위	기본사용료		비고
피아노	연주용	1회공연	60,000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피치 변경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복구 한다. - 장치봉은 공연·행사 중 (리허설 포함) 작동할 경우 부과함 - 덧마루, 댄스플로어의 설치 및 철거는 사용자가 하여야함 (관련소모품 지참) - 댄스플로어 사용은 무용공연에 한함
무대	승강무대	1회공연	50,000		
	댄스플로어	1회공연	100,000		
	덧마루	1회	기본 66㎡ 이하	50,000	
			66㎡ 초과 추가 6.6㎡당	10,000	
	이동용합창단석	1일	60,000		
장치봉	1일	20,000			
음향시설	기본사용료		1일	100,000	- 음향시스템 1일 기본 : 음향콘솔, 메인 스피커, 모니터 스피커 2대 - 외부 음향시스템 극장 장비 연동시 음향시스템 기본사용료 적용 - 이동형 음향장비 : 아날로그 믹서 1대, 파워드 스피커 2대, 마이크 2대, 운영인력 미제공 - 실황 녹화는 정면 전체화면 기준, 영상파일 제공 / 저장매체 지참시 - 건전지 및 소모품 사용자 부담
	마이크	PIN	1일 1개	30,000	
		W/L	1일 1개	20,000	
		콘덴서	1일 1개	10,000	
		다이내믹	1일 1개	5,000	
	모니터스피커		1일 1대	10,000	
	빔 프로젝트 (12,000Ansi)		1회	150,000	
	비디오 녹화		1회	40,000	
조명시설	기본조명		1회	50,000	- 객석 조명만 사용 시 부과하지 않음
	FOLLOW PIN		1회	20,000	
	무빙 라이트		1회 1대	15,000	
	포그 머신(액별도)		1대	20,000	
의상 및 대·소도구		1회	취득가액의 5퍼센트		- 단위 당 취득가액이 100,000원 이상인 것에 한함
냉·난방	공연장	1시간	시설 별 시간 당 연료 (전기포함) 시가에 10 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범위 내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냉방 : 6월 ~ 8월 - 난방 : 11월 ~ 3월
	전시실				
	다목적홀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피아노, 무대시설, 무대음향, 무대조명 중 공연(행사)연습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하며, 부속설비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에 따로 정할 수

제1749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인천광역시 서구구보 2023.05.04.(목)
기금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3년 5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03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구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 없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

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구청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가맹점을 말하며, “혜택플러스 가맹점”은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가맹점을 말한다.
3. “부가서비스”란 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하여 제1호의 선불전자 지급수단에 연계된 별도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충전·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을 말한다.
5. “운영대행사”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상품권(제3호에 따른 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중층구조인 경우는 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천사랑상품권의 수탁기관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6. “중층구조”란 시 조례 제4조에 따라 발행한 인천사랑상품권을 기본으로 하여 상품권(제3호에 따른 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을 발행·운영하는 구조를 말한다.
7. “인센티브”란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적립금, 쿠폰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2항부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유효기간, 유통지역,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층구조인 경우에는 시 조례 및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2. 유통지역은 인천광역시 서구 관할구역(이하 “서구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3. 1회 충전 권면금액의 최소한도액과 최대한도액은 1만원과 200만원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권면금액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만원과 200만원 범위에서 최소한도액과 최대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급수단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유통지역 및 권면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판매대행 협약을 구청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중층구조인 경우 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인천사랑상품권 대행점은 구청장과 상품권 대행점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1. 협약기간

2. 판매대행 주요업무 범위

3.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품권의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 ② 구청장은 제1항 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③ 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판매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6조(가맹점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층구조인 경우 서구지역에 소재하는 점포가 시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혜택플러스 가맹점 포함)으로 등록한 때에는 가맹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7조(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구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 사업자의 매출로 잡히지 않는 업종이나 사업체
2. 그 밖에 구청장이 상품권 발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사업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층구조인 경우에는 시 조례 제8조에 따른다.

제8조(가맹점 등록 취소)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사용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다만, 중층구조인 경우는 시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제10조(부가서비스 운영 등) 구청장은 서구사랑상품권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부가서비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단, 중층구조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 조례 제12조에 따른다.

- 1.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 2. 시스템 유지 보수

제3장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제12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 1. 일반회계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중앙부처 또는 인천광역시 보조금

3. 기금 운용 수익금 및 이자

4. 그 밖의 수익금 및 지원금 등

제1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상품권(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제2조제7호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3. 상품권(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 가맹점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4. 상품권(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 안내·홍보 등에 필요한 인건비
5.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상품권(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 활성화 시책 추진 및 판매촉진에 필요한 비용

제1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단, 중층구조의 경우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구 금고 등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기금적립금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2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제17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기능)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중요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 25조를 준용한다.

제19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상품권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상품권 담당

②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민관운영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제21조(민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민관운영위원회(이하 “민관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 2. 부가서비스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제17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민관운영위원회 구성) ① 민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관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상품권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 2.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
- 3. 소상공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 4. 복지분야 전문가 또는 유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 5. 소상공인 지원 관련 공공기관에 소속된 사람
- 6. 지역사랑상품권 분야의 전문가
- 7. 그 밖에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민관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5조(민관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민관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민관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민관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위원의 수당) 제18조, 제25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상품권 활성화 시책 및 지원

제27조(캐시백 등)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에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결제금액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캐시백(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혜택플러스 가맹점의 활성화를 위해 서구지역 혜택플러스 가맹점에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제1항의 인센티브와 별도로 결제금액의 100분의 5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별 캐시백 제공 한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이용자가 법인 및 가맹점인 경우에는 캐시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중층구조인 경우에는 시 조례에 따른

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각각 캐시백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캐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8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상품권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각종 시혜성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 공익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정부기구 등에게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사 및 이벤트 등에 따른 경품, 시상금 등 지원 및 지급

가. 경품추첨행사

나. 퀴즈이벤트

다. SNS 홍보이벤트

라. 가맹점 방문이벤트

2. 상품권 사용자에게 상품권 사용금액의 일정부분을 할인해 주는 쿠폰 제공

가. 제공대상 : 상품권 사용자

나. 제공방법 : 앱 내 쿠폰으로 제공

다. 제공한도 : 5,000원 범위 내

라. 제한기준 : 월 2회 이하

3. 가맹점(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에게 상품권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할인, 수

4. 가맹점(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 홍보에 필요한 마케팅 지원
 5. 가맹점(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 홍보에 필요한 물품 및 인쇄물 등 구입·제작·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경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경품 등 세부기준(제28조제5항 관련)

구 분	시 기	지급범위	지급방법 및 기준	지급수단
경품 추첨행사	연 1회	전년도 상품권 발행액의 1/10,000 범위	경품권 제공 및 추첨 (상품권 결제액 5만원당 경품권 1매 제공)	캐시백 또는 부가서비스 쿠폰
퀴즈이벤트	월 1회	매회 50만원 범위	상품권 관련 퀴즈 출제 및 정답자 추첨 (1회 50명 한정)	부가서비스 쿠폰 (1인 1만원 범위)
SNS 홍보이벤트	월 1회	매회 100만원 범위	카페, 블로그, 인스타 등 홍보이벤트 참여자	캐시백 (1인 1만원 범위)
가맹점 방문이벤트	월 1회	매회 100만원 범위	가맹점 방문 및 이벤트 참여자	캐시백 (1인 1만원 범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3년 5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034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 제3호”를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충전 인프라”란”을 ““충전시설”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급속충전시설”이란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
· 출연한 기관

제3조 중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충전인프라”를 각각 “충전시설”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충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충전인프라”를 “충전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충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충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동종 또는 동급차량)의 최종판매 가격의 차액으
로서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단, 신규등록 전기자동차에 한함)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시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해당 소
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8
조제4항에 따라 5년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을 “「대기환경보
전법」 제58조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내에 충전인프라”를 “내 충
전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내에”를 “내”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10조의2 제1항”을 “법 제1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 다만,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급속 충전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공기관에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의3(관리·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충전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 등을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 위탁을 받은 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운영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영차고지 이용 요금표 (제5조제1항 관련)

구분	정기권	
	월	6개월
화물자동차	120,000원	720,000원

비고

1. 정기권 계약은 6개월 단위로 한다.
2. 공영차고지 이용 정기권 등록 시 출·퇴근 차량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4조(구성)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사항 등 보고) ① 대표의원은 그 교섭단체의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이동(異動)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등) ① 의장은 제3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사용내역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임한다. 다만,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명부 (제4조제2항 관련)

□ 교섭단체 명칭:

□ 구성연월일:

□ 대표의원

소속 정당	의 원 명	서 명

□ 소속 의원 연서 명부

연 번	소속 정당	의 원 명	서 명	비고

년 월 일

(○○○○○) 대표의원 (서명)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변경 보고

(제5조제2항 관련)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 의원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 사항

대 상 의 원		변 경 사 항			비 고
소속정당	의원명	일 자	내 용	사 유	

※ 변경사항 중 “내용”란에는 “교섭단체 탈퇴”, “신규가입” 등을 기재하고, “사유”란에는 “당적 취득·상실”, “의원직 상실”, “사망” 등을 기재함

년 월 일

(○○○○○) 대표의원

(서명)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귀하

제1749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2023.05.04.(목)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식

2023년 5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037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한다”를 “같이 정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으로, “의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을 “법 제43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의장은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 및 점검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의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한 기관·단체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제7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관리인 등 겸직 금지)”를 “(겸직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7.11.]

1.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제9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을 “법 제4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구”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와”를 “구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연번	검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검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 거 구 분	지 역 구
성 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검 직 내 용	기관·단체명		
	직 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input type="checkbox"/> , 상공업 <input type="checkbox"/> , 건설업 <input type="checkbox"/> ,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 교육 <input type="checkbox"/> , 전문직 <input type="checkbox"/> , 기타 <input type="checkbox"/>	
	영리성 여부	영리 <input type="checkbox"/> , 비영리 <input type="checkbox"/>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input type="checkbox"/> , 보수 미수령 <input type="checkbox"/>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p>「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인)</p> <p style="text-align: right;">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귀하</p>			

[별지 제2호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 거 구 분	지 역 구
성 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명					생년월일				
수의		총명							
계약체결		본인 관련자명			본인, 직계존·비속명				
제한		배우자 관련자명			유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명			
관련자					무	-			
연번	관계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p>※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p> <p>※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p> <p>※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p> <p>※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p>									
<p>「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인)</p> <p style="text-align: right;">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귀하</p>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3년 5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규칙 제1055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등) ①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연습사용, 체력단련

등)하려는 자에게 사용일과 사용시간이 기재된 이용권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자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부대시설 사용 확인서를 제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체육센터 사용을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 및 교부 절차는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 납부 영수증으로 사용허가(변경허가)서를 대체할 수 있다.

제3조(회원모집) ①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체육·문화분야의 강습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등록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별도 서식의 회원카드를 제작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회원의 모집은 강좌별 강사 수 및 시설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경우
2. 체육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이용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3. 그 밖에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강좌의 변경 및 폐강) ① 회원은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강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강좌의 변경신청 시 사용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강좌의 특성에 따라 시간을 변경해야 할 경우 회원에게 미리 알

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폐강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5조(강사배치) 구청장은 프로그램 운영상 강사를 위촉 또는 초청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강사의 위촉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강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긴급히 위촉해야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4조제4항 및 조례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을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각 반환한다.

제7조(출입증 발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 1. 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공무 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발급대장 등 관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 서식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 1. 사용허가(변경허가)서 교부대장: 별지 제5호서식
- 2. 이용권 발급대장: 별지 제6호서식
- 3. 회원권 발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 4. 출입증 발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제9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

만, 그 밖의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점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은 월 2회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일은 체육시설 여건에 따라 별도로 지정한다.

제11조(운영 위탁 신청) 조례 제17조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그 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기간 연장) ① 수탁자는 조례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그 결과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탁자는 매년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제24조 및 별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중 “공연장”에 관한 규정은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조례 시행규칙」 개정 이후 폐지한다.

[별표]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관일(제9조 관련)

명 칭	구 분	사용시간	휴관일
북청라대교 교량하부체육시설	조 기 주 간 야 간	06:00 ~ 10:00	명절(설, 추석)연휴,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가좌배수지 배드민턴장		10:00 ~ 18:00	
마전게이트볼장		18:00 ~ 22:00	
서구국민체육센터	조 기	06:00 ~ 09:00	매주 일요일, 명절(설, 추석)연휴 정부 및 구청방침에 따른 휴일 그 밖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날 ※ 수영장 : 토요일 06:00 ~ 17:00
청라복합문화센터	오 전	09:00 ~ 13:00	
원당문화체육센터	오 후	13:00 ~ 18:00	
불로문화체육센터	야 간	18:00 ~ 22:00	
서구실내게이트볼 장	조 기 주 간 야 간	06:00 ~ 09:00 09:00 ~ 18:00 18:00 ~ 22:00	매주 월요일, 명절(설, 추석)전일, 당일 그 밖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 주말, 공휴일 : 07:00 ~ 21:00
검암국궁장	조 기 오 전 오 후 야 간	06:00 ~ 09:00 09:00 ~ 13:00 13:00 ~ 18:00 18:00 ~ 22:00	연중무휴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제2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사 용 자	단 체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법인)		성별 (남/여)	
	주 소	연 락 번 호		전 화 : H P :	
사용시설명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	목 적	사 용 인 원		명	
	행사내용				
사용기간	대관기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 부터	(시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 까지	(일간)		
	본행사시간	년 월 일 시	준비시작 시간	년 월 일 시	
시설사용 및 부대시설	<input type="checkbox"/> 마이크 <input type="checkbox"/> 빔프로젝트 <input type="checkbox"/> 냉·난방 <input type="checkbox"/> 에어로빅실 <input type="checkbox"/> 세미나실 <input type="checkbox"/> 체육관 <input type="checkbox"/> 설치시설물()				
산출내역	일금		원정(금)		
사 용 료					
변경사항 (변경허가 신청시)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p>「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 단 체 : (성 명) : 주 소 :</p> <p style="text-align: right;">○ ○ ○ ○ 귀하</p>					

[별지 제1호서식-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인천광역시 ○○○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은 이용자께서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지 알려드립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목적

○ ○○○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회원관리, 대관등록관리, 고지서발행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번호, 사용목적, 대관기간
- 선택항목 : 사용인원, 행사내용
- 개인정보 수집방법 : 방문 및 인터넷수강 신청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방식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년(탈퇴 또는 삭제 요구시 까지)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목적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개인정보의 제공 : 아래의 경우 외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에 의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이용자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조회, 수정 및 가입해지의 요청
-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 개인정보 조회, 수정 및 해지, 삭제 등의 요청은 “내 정보 변경” 및 “삭제요청”등을 클릭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직접 수정하거나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
-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함.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에 의함.
-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회원가입 및 홈페이지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공 받는 자 : _____ ○ 제공 목적 : _____ ○ 제공항목 : _____
- 보유기간 : _____ ○ 수집동의 거부시 제한되는 항목 : _____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서(제2조제2항 관련)									
허가번호:									
사 용 자	단 체 (성 명)								
사용목적	목 적								
사용기간	대관기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	부터	(시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	부터	(일간)
사 용 료	일금	원정(금)							
변경사항 (변경허가 신청시)	당초 허가내용			변경 허가내용					
<p>「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 ○ (인)</p>									

[별지 제3호서식]

부대시설 사용확인서(제2조제4항 관련)

(단위 : 원)

사용시설명				
행사명				
부대시설	구분	사용시간	산출금액	담당확인
	○○○	시분부터 시분까지		
	○○○	시분부터 시분까지		
	난방	시분부터 시분까지		
	냉방	시분부터 시분까지		
총금액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단체명 :

확인자 :

(인)

○○○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시설사용 취하서(제2조제5항 관련)

사 용 자	단 체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연 락 번 호		
	환불계좌					
시설명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	목 적			사 용 인 원		
	행사내용					
사용기간	사용취하 대관기간					(시간) (일)
						(시간) (일)

상기 본인은 위의 체육관 사용을 ()으로 인하여 대관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 ○ ○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사용허가(변경허가)서 교부대장(제8조제1호 관련)

번호	신청인 인적사항			사용허가내역			변경 사항	비고
	성명	주소	연락처	시설명	사용기간	사용료		

[별지 제6호서식]

이용권 발급대장(제8조제2호 관련)

번호	성명	연락처	발행일	발행시간	비고

[별지 제7호서식]

회원권 발급대장(제8조제3호 관련)

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강좌명	발행일 (회수일)	유효기간	수강료	비고

[별지 제8호서식]

출입증 발급대장(제8조제4호 관련)

번호	소속	성명	발행일	회수일	비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3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관 사용허가”를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회관”을 “문화시설”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용자가 조례 제14조에 따라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회관”을 “문화시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회관”을 “점검 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지정하여 문화시설”로, “실시하여”를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비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다음 날”을 “다음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중 “별표 제2호”를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한다.

제12조 중 “제23조”를 “제22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 약 서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본인(단체)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 가.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과 시설사용 허가조건을 준수한다.
- 나. 사용시설 및 부속시설을 보호·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한다.
- 다. 사용기간 동안 행사요원 및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서약자가 진다.
- 라. 사용자와 실제 운영자가 서로 다르게 하는 경우 또는 타인(단체)에게 관리 양도 등을 하지 않는다.
- 마. 국가적 행사나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사항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자	단체명(법인명) :	(인)
	성명(대표자명) :	(인)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행사 및 시설사용계획서(제2조제2항제1호 관련)

행사(공연)장소			행사(공연)명		
행사(공연)일시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사전준비		(년 월 일까지 시 ~ 시)	
		리허설및무대연습		(년 월 일까지 시 ~ 시)	
출연 예상인원		장비 반입		연락처	☎ : 휴대폰:
제출서류 1. 행사시 일정표는 2일 전까지 3부 제출 2. 장비 반입시 장비목록을 작성하여 행사 2일전까지 1부 제출 (무대효과기·피아노·비디오촬영·기타 전기 및 무대에 설치되는 모든 장비) 3. 녹음희망 시 녹음매체는 2일 전까지 제출)					

행사관련 부대시설 사용여부

시 설 물		사용계획(시간)		시 설 물		사용계획(시간)	
무대조명	조명	공연행사준비		무대시설	바 텐	총사용량	
		본 행사				공연작동	
	핀스포트라이트	공연행사준비			수평이동무대	공연행사준비	
		본 행사				본 행사	
	포그머신 (액별도)	공연행사준비			오케스트라 비트	공연행사준비	
		본 행사				본 행사	
					회전무대	공연행사준비	
						본 행사	
드라이 아이스 (액 별도)	공연행사준비		덧마루	본 행사			
	본 행사						
스트로바	공연행사준비		후로링매트	공연행사준비			
	본 행사			본 행사			
			음향반사판	공연행사준비			
				본 행사			
무대음향	무빙위시라이트	공연행사준비		기타시설	합창단석	본 행사	
		본 행사				피아노	공연행사준비
	마이크	공연행사준비					본 행사
		본 행사			냉·난방		
	M.R	공연행사준비				분장실	1층
		본 행사			지층		
	녹음	FILE			출연자대시걸		
						대·소도구 및 기타	
V.P사용	공연행사준비						
	본 행사						

위 공연(행사)를 위하여 대관 규칙 및 무대안전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행사주체 담당자
성 명 : (인)

문화시설 담당자
성 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 사용 변경 신청서(제2조제3항 관련)					
단체명 (법인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행사명					
변경사유					
변 경 사 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일시				
	사용시설				
	부속시설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 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		(인)	
		성명(대표자명) :		(인)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 사용(변경) 허가서(제3조제2항 관련)				
신	단체명(법인명)			
청	성명(대표자명)	생	년	월 일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시설	기 본 시 설			
이용	부 속 시 설			
사 용 기 간		년	월	일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일간)		
사 용 목 적				
사용료	유 상			
	무 상			
첨 부		허가조건 1부.		
<p>「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설사용(변경)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붙여 허가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p>				

[별지 제6호서식]

() 사용료 감면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시설이용	기본시설			
	부속시설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일간
사용목적				
사용료	유상			
	무상			
감면신청 사유				
<p>「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의의 주소:</p> <p style="text-align: center;">성 명: (인)</p> <p>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p>				

[별지 제7호서식]

() 입장권 검인 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

사용장소	단체명 (법인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사용목적	사용기간	비고

구분	검인요청		비 고
	수량	금액	
합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대권			

□ 판매기간:

□ 입장권 판매 검인내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입장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 입장수입 정산 내역서(제9조제2항 관련)

사용장소	단체명 (법인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사용목적	사용기간	비고

구분	검인		판매		잔량	정산내역			비 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기금 및 세금	회 관 사용료	입 장 수입액	
합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대권									

□ 입장권 수입내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내역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 위: 성 명: (인)

입회자 직 위: 성 명: (인)

확인자 직 위: 성 명: (인)

[별표 1]

예술단체별 정원(제3조와 관련)

예술단체명	정 원	비 고
합 창 단	예 술 감 독 1명 반 주 자 1명 단 무 장 1명 성악지도자 1명 단 원 <u>50명</u>	
소년소녀합창단	예 술 감 독 1명 반 주 자 1명 단 무 장 1명 성악지도자 1명 단 원 <u>60명</u>	
풍 물 단	예 술 감 독 1명 훈 련 장 1명 단 무 장 1명 단 원 <u>50명</u>	

